

조 정 조 서

사 건 [redacted] 위자료 손해배상 등 청구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

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조정장 판사 [redacted]

조 정 위 원 [redacted]

법 원 주 사 [redacted]

원고 [redacted]

출석

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조효동

출석

다음과 같이 조정성립

조 정 조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5,000,000원을 2024. 11. 15.까지 지급한다. 다만, 피고가 위 지급 기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 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